

## 제222차 임시이사회 안건집

제안자	(사)한국음반산업협회장
제안일	2026년 1월 13일(화)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순서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의장인사

4. 전차 이사회 의결사항

5. 주요 업무보고

(주)채리소프트 특허 침해 주장 관련 협회 대상 소송에 따른 대응 건  
2026년 상반기 협회 주요 일정

6. 부의 안건

의안 제01호

의안 제02호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의 건

의안 제03호 전무이사 직무대행 임명 및 전무이사 공석상황  
해소의 건

의안 제04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 제05호 정회원 인준의 건

7. 기타사항

8. 진행 및 예정사항

# 전차 이사회(제221차) 의결사항

## 1. 개 요

가. 일 시 : 2025. 11. 17.(월)

나. 재적이사 : 10인

다. 서면결의 참여 이사 : 10인

(1) 이사(10인) : 최경식(의장), 김광, 박영석, 서대경, 서판석,  
시성웅, 이광용, 이영웅, 임두빈, 김희성

## 2. 의안심의

### 의안 제01호 법률용역계약 체결의 건

보상금수령단체 공모에 대한 협회의 참여와 관련하여, 작성 자료의 법률검토 등을 위하여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원안에 대해 재적이사 10인 중 5인이 찬성하고 5인이 반대하여 가부동수가 되었으며, 이에 정관 제53조(의결정족수)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부결로 결정함

# 주요 업무보고

## 1. (주)채리소프트 특허 침해 주장 관련 협회 대상 소송에 따른 대응 건

### 가. 개요

- 2025년 11월 (주)채리소프트가 협회를 대상으로 소송(2025가합14887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을 제기한 것에 대한 협회 대응 등 주요사항을 보고함

### 나. 주요사항

#### (1) 사건 배경(요약)

- 채리소프트는 프로그램 개발, 유지보수를 주 사업으로 하는 곳으로 과거 협회의 용역 사업(정산 대행 등)을 수행한 바 있으며, 본 소송과 관련된 정산 프로그램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 채리소프트는 협회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아이아이소프트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통해 해당 정산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채리소프트의 정산 프로그램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제기를 통해 협회에 손해배상(2억 원과 정산 프로그램의 폐기완료일까지 월 8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 (2) 소제기 후 주요 경과사항

- 2025. 11. 28. : (주)채리소프트 소장 수신

- 2026. 12. 01~03. : 내부 검토(소송대리인 선임 등)

- 2026. 12. 04. : 법무법인 청목에 사건위임(소송대리인 선임 등 포함) 의뢰

- 2026. 12. 19. : 법무법인 청목과 사건위임계약 체결, 관련 자료 전달 등 후속조치

#### (3) 소송대리인 선임 사유

- 본 소송은 협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및 대응을 위해 소송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함

- 본 소송과 관련하여 과거(2024년 11월)에 (주)채리소프트가 협회에 침해 주장을 했을 당시 협회는 특허분야 전문가(비엔아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며, 법무법인 청목을 통해 초기 대응으로 (주)채리소프트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자문 및 내용증명 발송 등을 진행한 바 있음

- 이에 본 소송과 협회 및 관련 산업의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청목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을 추진함

#### (4) 향후계획

- 본 소송에 대한 자료 준비 등 철저한 대응 추진

[별지 1 - (주)채리소프트 소장 - 청구 취지

## 2. 2026년 상반기 협회 주요 일정

회의명	개최일(예상)	비고
차기 정회원 분류 작업	'26. 01. 06.(화)	- 라이선스&분배팀, 회원관리팀
차기 대의원 분류 작업	'26. 01. 06.(화)	- 라이선스&분배팀, 회원관리팀
보상금수령단체 대면평가	'26. 01. 12.(월)	- 발표 : 협회장, 전무이사 직무대행
제222차 임시 이사회	'26. 01. 13.(화)	- 정회원 인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현 정회원 임기 종료	'26. 01. 23.(금)	
선거관리위원회 준비	'26. 1월	- 대의원 인준 대상자 정리 완료
1~○차 선거관리위원회	'26. 1~2월	- 대의원 인준(안) 검토, 확정
1~○차 정관개정위원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발표 후	- 정관 및 주요 규정 검토
2025년도 결산, 사업계획 수립	'26. 01. 30.(금)	- 사무처(안) 수립
2025년도 상하반기, 결산 감사	'26. 2월 1주 or 2주	
제1~2차 사업 및 예산 소위원회	'26. 2월 1주	- 사업 및 예산(안) 검토, 확정
제223차 임시 이사회 소집통보	'26. 2월 1~3주	
제223차 임시 이사회	'26. 2월 2~4주	- 사업보고 및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수수료율, 정기 대의원총회 및 회원총회 개최 건 등
정기 대의원총회 및 회원총회 소집통보	'26. 2~3월 중	
정기 대의원총회 및 회원총회 개최	'26. 2~3월 중	- 사업보고 및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수수료율 등 - 대의원 선출(회원총회)
현 대의원 임기 종료	'26. 02. 28.(토)	
제224차 정기 이사회 소집통보	'26. 3월	
제224차 정기 이사회	'26. 3월	- 사외이사 추천 건, 임시 대의원총회 및 회원총회 개최 건 등
○~○차 선거관리위원회	'26. 3~5월	- 감사 선거 준비(선거인명부 등)
○~○차 정관개정위원회	'26. 3~5월	- 정관 및 주요 규정 개정(안) 수립,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 필요)
임시 대의원총회 및 회원총회 소집통보	'26. 5월 3주 or 4주	
임시 대의원총회 및 회원총회 개최	'26. 6월 1주 or 2주	- 감사선거, 사외이사 선임 등 - 정관 개정(회원총회)
임원 관련 후속조치	'26. 6월	- 감사 승인 신청 - 사외이사 승인 신청, 등기
○차 선거관리위원회	'26. 6월	- 결산 및 해산
제225차 정기 이사회 소집통보	'26. 6월	
제225차 정기 이사회	'26. 6월	- 총회 결과 보고 등
현 감사 임기 종료	'26. 06. 25.(목)	
현 사외이사 임기 종료	'26. 07. 03.(금)	

\* 상기 일정과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의 안 심 의

의안 제01호



의안 제02호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의 건

의안 제03호 전무이사 직무대행 임명 및 전무이사 공석상황  
해소의 건

의안 제04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 제05호 정회원 인준의 건

의안 제1호

[Redacted]

1. 의결주문

[Redacted]

2. 제안설명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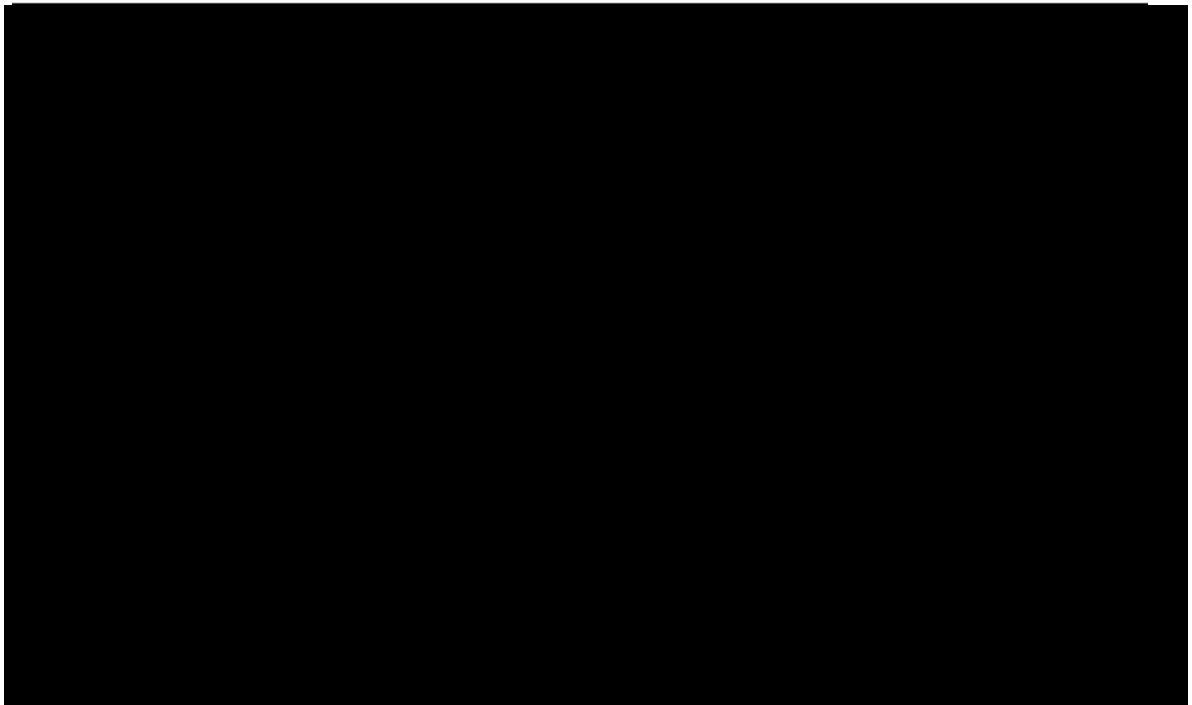
3. 주요내용

가. 관련 근거 :

[Redacted]

나. [Redacted]

[Redacted]



라. [Redacted]

[Redacted]

-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4. 심의

[Redacted]

# 의안 제2호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의 건

## 1. 의결주문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조직개편)의 건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주문함

## 2. 제안설명

지난 제211차 이사회(2024. 08. 09.)에서 경영혁신 및 협회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을 개정하는 원안에 대하여 재적이사 10인 중 5인이 원안 찬성, 5인이 기권함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정관 제53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장이 원안 가결로 결정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 중요사항을 긴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결의한 것은 정관 제52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직 개편사항에 대해 이사회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시정사항을 받은 바, 제217차 이사회(2025. 06. 18.)에서 제211차 이사회 안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상정 하였으나 ‘보류, 근거를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결의함

이후 2025년 제1차 인사위원회(2025. 10. 23.)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반영한 의안을 제220차 이사회(2025. 10. 31.)에 재차 상정하였으나 부결됨

협회는 현재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과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안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상황으로, 상기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심사’ 일정을 기준으로 한정된 조직개편(안)과 함께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의 건을 이사회에 부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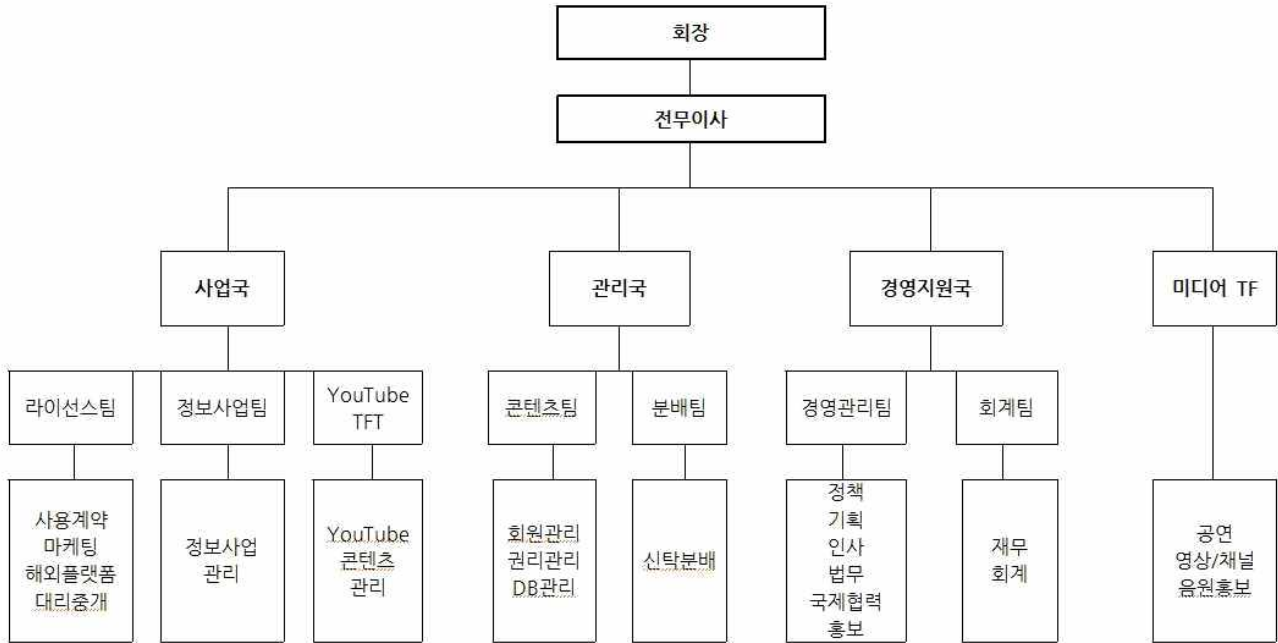
## 3. 주요 내용

### 가. 주요 조직개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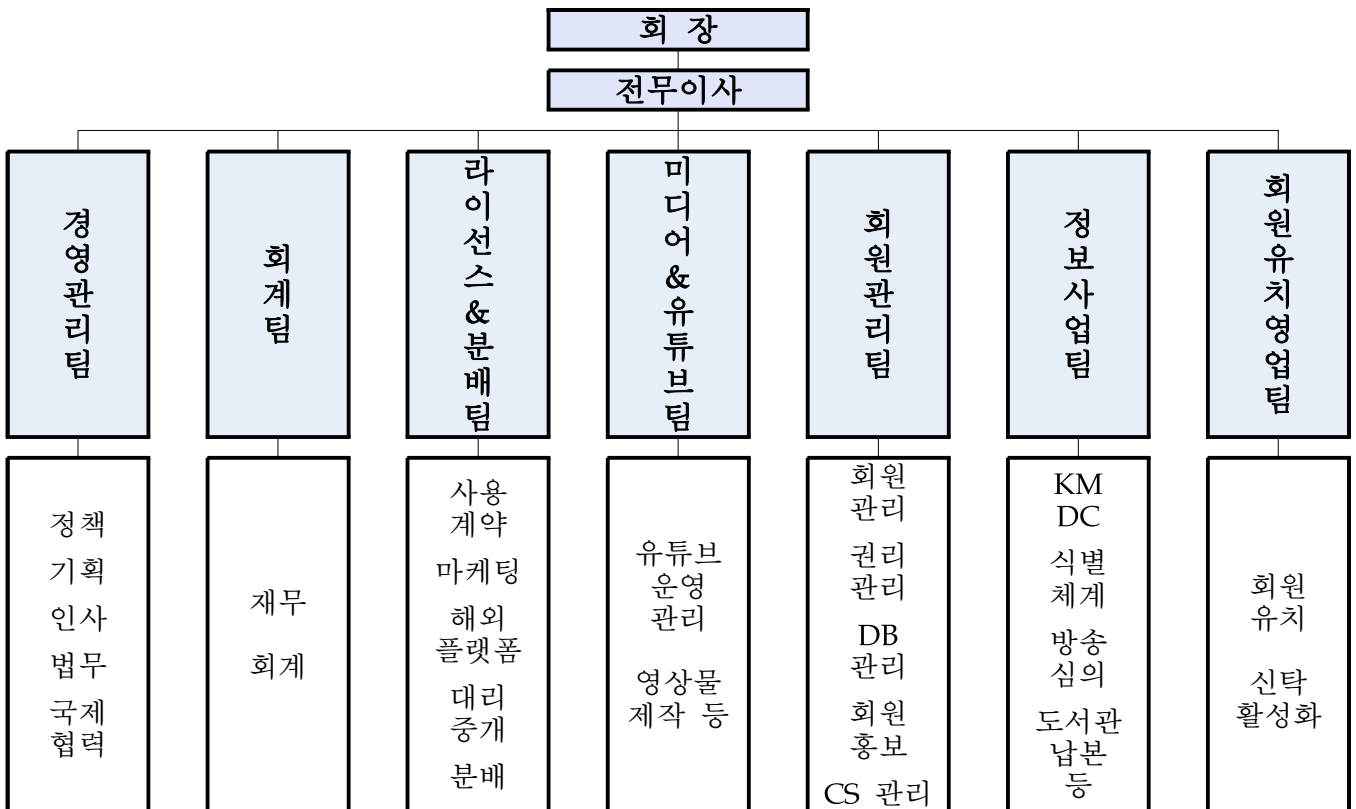
- (1) 3국 1TF 7팀을 7팀으로 편제 조정
  - 신속한 보고 및 의사결정
- (2) 회원유치영업팀 신설
  - 회원유치영업팀을 신설, 500억 달성을 위한 초석 마련
- (3) 징수와 분배업무를 라이선스&분배팀으로 통합
  - 징수와 분배업무를 한팀에서 수행토록 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 (4) 유튜브TFT를 미디어&유튜브팀으로 승격
  - 유튜브 업무 집중 관리를 통한 회원서비스 강화, 매출 증대

## 나. 사무처 조직도(조직개편 전/후 비교)

<조직개편 전 조직도 : 3국 1TF 7팀>



<조직개편 후 조직도 : 7팀>



다.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신규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사유
<p><b>제4조(기구 및 정원)</b> ① 사무처의 조직은 (별지 1)과 같다.</p> <p>②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37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직급별, <b>국·팀별</b>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전무이사가 정한다.</p> <p>④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p>	<p><b>제4조(기구 및 정원)</b> ① 사무처의 조직은 (별지 1)과 같다.</p> <p>②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37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직급별, <b>팀별</b>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전무이사가 정한다.</p> <p>④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p>	편제 조정
<p><b>제6조(보직)</b> ① 전무이사는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del>② 국장은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del></p> <p>③ 팀장은 <u>국장의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처리한다.</u></p> <p>④ 직원은 <u>국장 및</u> 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p> <p>⑤ 제8조에 의한 정원 외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p>	<p><b>제6조(보직)</b> ① 전무이사는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② &lt;삭제&gt;</p> <p>③ 팀장은 <u>전무이사의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u></p> <p>④ 직원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처리한다.</p> <p>④ (현행과 동일)</p>	신속한 보고 및 의사결정
<p><b>제7조(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b> ①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은 전무이사가 정한 별도로 정한다.</p> <p>② 직제의 서열은 <u>사업국장, 관리국장, 경영지원국장</u> 순으로 한다.</p>	<p><b>제7조(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b> ① (현행과 동일)</p> <p>② 직제의 서열은 <u>선임 상위 직급</u> 순으로 한다.</p>	
<p><b>제9조(업무매뉴얼)</b> ① 소속직원은 사무처직제 및 업무내역에 따라 해당 보직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업무매뉴얼은 소속 <u>국장</u>이 관리하며 1부는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p> <p>③ 인사담당자는 본 규정에 따른 직제 및 업무매뉴얼을 취합·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업무매뉴얼은 항상 최신의 업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를 한다.</p>	<p><b>제9조(업무매뉴얼)</b> ① (현행과 동일)</p> <p>② 업무매뉴얼은 소속 <u>팀장</u>이 관리하며 1부는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현행과 동일)</p>	편제 조정

[별지 2.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안]

마. 조직개편 전·후 사무처 조직 및 직원 현황

(1) 조직개편 전 기준 사무처 조직 및 직원 현황

- 조직개편 이후 입사자는 현재 담당파트를 반영함
- 경영 담당자(경영지원국장, 경영관리팀장 등) 퇴사로 인사이동 필요

국	팀	파트	성명	비고
전무이사 직무대행			<u>&lt;임명 필요&gt;</u>	
사업국	라이선스팀	국장	김관기	
		팀장	이승훈	
		사용계약 및 정산	현유진	
		국내외서비스 음원관리	김은총	
	정보사업팀	국내외서비스 음원관리	한예빈	
		팀장	(김관기)	겸직
		시스템총괄	권혁세	
		정보사업관리, ISRC, UCI	이용환	
	YouTube TFT	납본, 심의	명제승	
		팀장	(이승훈)	겸직
		영상기획	전승훈	
		YouTube 운영	조서운	
YouTube 운영			<u>&lt;공 석&gt;</u>	
관리국	국장		김계형	
	콘텐츠팀	팀장	정정수	
		DB	진소운	
		회원접수	이진영	
		회원접수	김민하	
	분배팀	팀장	(김계형)	겸직
사용료 분배		정수진		
경영지원국	국장		<u>&lt;공 석&gt;</u>	
	경영관리팀	팀장	<u>&lt;공 석&gt;</u>	
		법무/국제/인사	<u>&lt;공 석&gt;</u>	
		경영/기획/총무	이용규	
		기획/국제	장준	
		총무	오세관	
	회계팀	팀장	시현진	
		회계 및 재무	이선주	
미디어TF	국장	박성민		
	공연	<u>&lt;공 석&gt;</u>		

(2) 조직개편 후 기준 사무처 조직 및 직원 현황(기준일 : 2026. 01. 05.)

팀	파트	성명	비고
전무이사 직무대행		<u>&lt;임명 필요&gt;</u>	
경영관리팀	팀장	이용환	
	국제/기획	장준	
	총무	오세관	
회계팀	팀장	시현진	
	회계 및 재무	이선주	
라이선스&분배팀	팀장	이승훈	
	사용계약 및 정산	현유진	
	사용료 분배	정수진	
	국내외서비스 음원관리	김은총	
	국내외서비스 음원관리	한예빈	

미디어& 유튜브팀	팀장	정정수	
	유튜브 운영 관리/콘텐츠 제작	전승훈	
	유튜브 운영 관리	조서운	
정보 사업팀	팀장	권혁세	
	정보사업관리, 국고, 식별체계, 방송심의관리	(김계형)	겸직
	방송심의	명제승	
	납본	(김관기)	겸직
	납본	<공 석>	채용 예정*
	납본	<공 석>	채용 예정*
	KMDC	<공 석>	채용 예정**
회원 관리팀	팀장대행	이용규	
	DB	진소운	
	회원 접수	이진영	
	회원 접수	김민하	
회원유치 영업팀	팀장	(박성민)	겸직
	회원유치 영업	김관기	
	회원유치 영업	김계형	

\*2026년도 납본 사업 개시 등 상황에 따라 채용 예정

\*\*2026년도 KMDC 사업 개시 등 상황에 따라 채용 예정

#### 바. 참고사항

##### (1) 제한 사항

- 본 안건과 관련된 조직개편 사항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정하여,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심사 결과 발표 이후 그 결과와 관계 없이 이사회에서 신규 조직개편(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비고

- 현 사무처 조직은 제211차 이사회(2024. 08. 09.)에서 서면결의한 후 2024. 09. 01.자 인사명령으로 이행되었으며, 현재에도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4. 심의

위와 같이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을 개정하는 안(단, 조직개편 사항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정하며, 기간 내 이사회에서 신규 조직개편(안)을 심의·의결)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 의안 제3호 전무이사 직무대행 임명 및 전무이사 공석상황 해소의 건

### 1. 의결주문

전무이사 직무대행 임명 및 전무이사 공석상황 해소의 건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주문함

### 2. 제안설명

2025. 12. 16.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문경영인 관련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수신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무이사 직무대행 임명 및 전무이사 공석상황 해소 방안을 이사회에 부의함

### 3. 주요 내용

#### 가. 전문경영인 관련 시정명령 통보 주요 내용(요약)

- 협회는 긴급 임원 간담회(2024. 12. 20.)를 통해 전임 전무이사 사임서 제출 사실 및 전무이사 직무대행 선임사실을 보고했다고 답변하였으나, 임원 간담회는 정관에 따른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며 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므로 아래 내용과 같이 시정명령을 통지함

- |  |
|--|
| (1) 내용 : 전무이사 직무대행 임명 및 전무이사 공석상황 해소방안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을 것 |
| (2) 이행기한 : 2026. 01. 16.(금)                                |
| (3) 이행보고 : 이사회 종료 후 즉시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등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할 것   |

### [별지 3. 전문경영인 관련 시정명령 통보 수신 공문]

#### 나. 전무이사 직무대행 임명(안)

- (1) 1안 : 박성민 부장을 전무이사 직무대행으로 임명

※ 2024년 12월 김지환 전 전무이사가 협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함으로 사무처에 큰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전무이사 직무대행을 급히 지정하게 되었으며, 당시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개정안)에 근거한 전무이사 직무대행 대상자는 2인(김관기 부장, 박성민 부장)이나, 김관기 부장이 전무이사 직무대행을 고사함에 따라 박성민 부장을 전무이사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수행 중

○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제7조(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①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은 전무이사가 정한 별도로 정한다.

② 직제의 서열은 선임 상위 직급 순으로 한다.

(2) 2안 :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 전 적용 시 직제 서열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 후 임명

① 사업국장 : 김관기 부장

② 관리국장 : 김계형 부장

③ 경영지원국장 : <공 석> (당시 담당자 퇴사)

○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 전)

제7조(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①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은 전무이사가 정한 별도로 정한다.

② 직제의 서열은 사업국장, 관리국장, 경영지원국장 순으로 한다.

(3) 3안 : 정관과 규정에 근거, 기타 직책 및 직급 등을 고려하여 임명

○ 정관

제23조(임원의 보선)

② 회장은 전무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 제17조에 따라 다시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선임 기간 중 사무처 직제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급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다. 전무이사 공석상황 해소 방안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말소

- 협회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김지환 전 전무이사를 말소 처리

※ 상황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결이 필요할 수 있음

(2) 선임 전무이사 선임

- 제220차 이사회 의결사항(전무이사 결원에 따른 후속조치 건으로 2026년 상반기 내 선임 전무이사 선임 완료)에 따라 추진하되, 가능한 선임 전무이사의 선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

4. 심의

전무이사 직무대행 임명(안)을 검토하여 전무이사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전무이사 공석 상황 해소 방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 의안 제4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1. 의결주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주문함

### 2. 제안설명

제5기 대의원 선임 인준과 감사 선거 등에 있어 전반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진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인선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함

### 3. 주요내용

가. 금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 대의원 선임(대의원총회에서 선임)에 관한 사항

※ 제4기 대의원 임기 : 2022. 03. 01. ~ 2026. 02. 28.

(2) 감사 선거(선출직 1인을 대의원총회에서 투표로 선출)에 관한 사항

※ 현 감사 임기 : 2024. 06. 25. ~ 2026. 06. 24.

나. 규정상 선거관리위원회 자격 및 인선 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협회장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로 확정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최초 개회 시 위원 중 호선

다. 관련 규정

#### ○ 선거관리 규정

**제3조(설치)** ① 임원의 선거 및 대의원 선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사무실은 본 협회 사무소에 둔다.

② 선관위는 임원 선거일 30일 전, 대의원 선임일 60일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 및 구성)** ① 선관위 위원은 회원 중에서 덕망 있는 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단, 선관위원이 임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 위원은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선관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선관위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선관위 위원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한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회장은 위원 위촉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라.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일(안) 심의

-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일 : 2026년 1월

※ 현 대의원의 임기가 2026. 02. 28.까지 이므로 선거관리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를 2025. 12. 30.에 설치해야 하나, 정회원 및 대의원 순위 산출 시 기준을 2025년도(2025. 01. 01. ~ 2025. 12. 31.)로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일을 2026년 1월로 정하고자 함

마. 선거관리위원 인선(안) 심의

<b>선거관리위원 추천 명단(안) - 5인</b>
김경남, 김철한, 전수길, 이상기, 신보연

**[별지 4 - 선거관리 규정]**

마. 참고사항

- 상기 선거관리위원 외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문위원(법률 전문가) 추가 예정

바. 향후 일정 : '보고사항 2. 2026년 상반기 주요 일정' 참조

**4. 심의**

2026년에 진행될 제5기 대의원 선임과 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2026년 1월 구성 및 설치하며, 협회장이 추천한 상기 5인의 위원을 인선하는 원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 의안 제5호 정회원 인준의 건

### 1. 의결주문

정회원 인준의 건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주문함

### 2. 제안설명

2026년 1월 임기가 종료하는 기존 정회원에게 대하여 정관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정회원의 입회기준 및 자격에 관한 규정

##### ○ 회원 입회에 관한 규정

**제3조(입회기준)**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입회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양도양수의 경우 승계등록 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 직전 4분기 도합 사용료 합계액이 전체 신탁계약자 중 1,000위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정회원 자격의 취득 심사)** ① 정회원 자격의 취득심사는 임기 만료에 따른 재구성 또는 본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결원 시, 이사회에서 하되 매 회계연도 1분기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양도양수의 경우 승계등록 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 직전 4분기(보선의 경우, 보선일 기준 전 4분기) 도합 신탁사용료 총액이 전체 신탁계약자 중 상위 1,000위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의 사용료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 입회일이 빠른 자를 우선 한다. 다만, 입회일 역시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제10조의 2 (회원 자격의 유지기간)** ① 본 규정에 따른 일반회원의 자격은 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입회 등록 완료일로부터 본 협회와 신탁계약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그 지위가 인정된다.

② 본 규정에 따른 정회원은 확정 공고일로부터 차기 정회원 선발 시까지 4년간 그 지위를 인정한다.

③ 제2항의 정회원의 자격에는 연임 및 중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나. 기존 정회원의 임기 및 현황

- 2022년 정관 개정을 통하여 과거 종신직의 정회원제도에서 4년마다 위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기준의 정회원제도로 개편하여, 제185차 이사회(2022. 01. 24.)에서 1,000인의 정회원을 인준하여 임기 중에 있음
- 사용료의 상위기준 1,000인에게 4년의 정회원 임기를 부여하였으며, 2026년 1월 23일 임기 종료 예정 ※ 현 정회원 임기 : 2022. 01. 24. ~ 2026. 01. 23.

#### 다. 정회원 인준 대상자

- 기준 직전 4분기(2025. 01. 01. ~ 2025. 12. 31)의 기간 중 분배액 상위 1,000위 [개인회원 936인, 법인사 64개사]

#### [별지 5 - 정회원 대상자(1,000인) 명단]

#### 라. 향후 진행방안

- 의안 가결 시, 확정 명단 1주간 공고
- 해당 정회원 중, 대의원 200인 선임 절차 진행
- 신규 정회원 기반, 제5기 대의원 선임 인준을 위한 회원총회 개최

#### 4. 심의

협회 정관 및 회원입회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상자 1,000인에게 정회원 자격을 인준하는 원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 기타사항

## 진행 및 예정사항